

II. 지원 자격

1. 공통사항 (※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가.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다.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마.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 단위 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바. 외국어고등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타 시·도의 중학교 졸업예정자(2018학년도 3월 외국어고 신입생 모집이 없는 타 시·도 지역)
- ※ 위 '나 ~ 마'항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에 의거 ①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해당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거나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에서 수학한 자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4.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5.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학교군별 추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2. 전형별 지원 자격

구분	인원	지원 자격
일반 전형	189	○ 지원자격의 '1. 공통사항'항을 충족한자
지역 우수자 전형	11	○ 과천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로 일반 전형의 지원 자격을 갖춘 자 (단, 전편입자의 경우 2017년 2월 28일 이전에 과천시 소재 중학교로 전편입한 자에 한함)
사회 통합 전형	50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사실이 없는 자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가.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⑥ 학교장 추천 학생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 가구(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 ⑥번 학교장 추천 학생만 학교장추천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예시]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객관적 증빙서류 예시]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부적정 예시 : 폐업확인서만으로 학교장 추천 학생 선정 → 객관적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나. 2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 ※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① 소년·소녀가장(형제·자매 포함)
- ② 조손가정 학생
- ③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해당자)
-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 ⑤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해당자)
-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다. 3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 ※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제출일 현재까지)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17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제출일 현재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⑥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⑦ 장애인의 자녀(「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부 또는 모)의 자녀)
- ⑧ 3학년 재적인원 25명 미만의 소규모중학교 졸업예정자(생활기록부상의 3학년

		<p>2학기 1차 지필평가 기준)</p> <p>- 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의한 학교 : 특성화 중학교, 각종학교, 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는 제외</p> <p>⑨ 경찰(경사 이하) / 소방공무원 (소방장 이하) / 교정공무원(교위 이하)의 자녀</p> <p>⑩ 환경미화원 / 우편집배원의 자녀</p>
<p>특례입학 대상자 전형</p>	(5)	<p>○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③항 해당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 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p>※ 단,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중학교 1학년 3월 전·편입자는 제외</p>
<p>국가 유공자 자녀</p>	(6)	<p>○ 해당 보훈(지)청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자</p>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특례입학 대상자가 아닌 일반귀국자는 국내 중학교의 2학년, 3학년 영어성적이 한 학기도 없다면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